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9 | 2023.11.14. (2023.11.06~11.1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1.06~11.12)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 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 ·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 · 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② '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③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④ 요금 · 마케팅 · 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 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향후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 강력히 적발 처벌키로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 구체화,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의 구체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다회용기 종류 신설,再生资源 관련 용어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요 법률 발의안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의원 등 10인)**」 등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현재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인사청문특위(11/13)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방위(11/15)에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개혁특위에서는 11/16(목)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 및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할 예정인 바 추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6
- 「은행간 시장 관행 및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한국은행) 9
- 「통신피 부담 완화 방안」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제1회 자유무역지역(FTZ) 혁신전략 포럼 개최(산업통상자원부) 11
-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금융위원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1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 14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중소벤처기업부) 1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금융위원회)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7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9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0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25
- 보험계리사법안(윤주경의원 등 12인)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2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의원 등 10인) 28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의원 등 10인)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2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9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29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3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의원 등 16인) 30
-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의의원 등 10인) ... 3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3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06~11.12)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
-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2. 주주의 표심을 잡아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표대결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및 시행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가상자산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 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 지원	2023-11-08
-------	---	------------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함. 고금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함

이번 대책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그동안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였으며, **건의 과제를 토대로 ①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② 행정절차 지연, ③ 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함. 특히, 건의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약 46조원 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음. 또한,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예정임

이와 함께,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임. 특히, 대규모 외국인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5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며, 조정위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K-컬처 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11월 중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6년 완공을 지원할 계획임. 한편,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 ◇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
- 지체되고 있는 투자의 조속한 재개 및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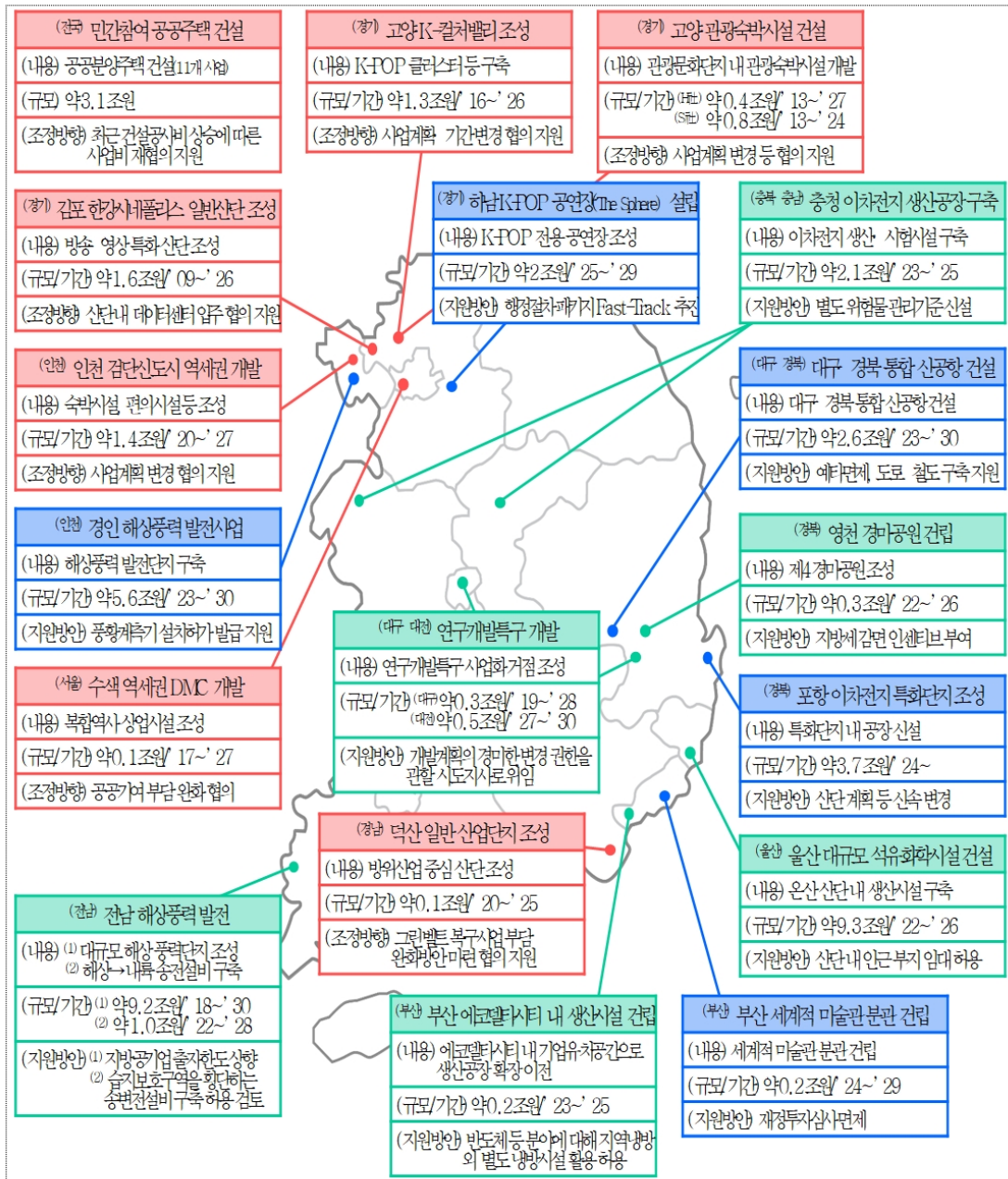
1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개선 +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 ①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약 9.3조원, '22~'26년, 울산 ▶ 기저재 적재공간 등을 위해 산단 내 인근 부지 임대 허용 추진 * '24년말 본격적 플랜트 구축 시작 후 일평균 11,000명 건설근로자 투입 전망 ②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약 2.1조원, '23~'25년, 충북 오창, 충남 서산 ▶ 이차전지 산업 특성을 반영해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연내) *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 완화 ③ 연구개발특구 개발 약 0.8조원, (대구) '19~'28년, (대전) '27~'30년 ▶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 위임 (과기정통부장관→시도지사) ④ 전남 해상풍력 발전 (단지조성) 약 9.2조원, '18~'30년, 전남 영광·신안·완도 (송변전설비 구축) 약 1조원, '22~'28년, 전남 신안 ▶ (단지조성) 일정요건 충족 시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투자본금 10% → 25%) * ①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②지방의회 의결 등, ③부채비율 100% 미만 등시 충족 ▶ (송변전설비 구축) 습지보호지역을 횡단하는 송변전설비 (해상풍력단지→내륙) 구축 허용 검토 * 폭해저로만 설치 가능 → 조일정기준 충족시 횡단 철탑 설치도 허용 ⑤ 영천 경마공원 건립 약 0.3조원, '22~'26년, 경북 영천 ▶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액 총량 추가 인정 ⑥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약 0.2조원, '23~'25년, 부산 강서 ▶ 항운·항승 유치가 중요한 반도체 등 분야에 대해 사용 의무화된 지역냉방 외 별도 냉방시설 활용 허용(연내)
2 인·허가 등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	⇒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면제·단축 등 추진 ①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 약 2조원, '25~'29년, 경기 하남 ▶ 관련 행정절차 패키지 Fast-Track 추진 (42개월 이상 → 21개월)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10~4개월), 개발제한구역 해제(12~8개월) 등 ※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하남시 유치 MOA 체결 예정(5월~하남시 12월) ②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약 3.7조원, '24~, 경북 포항 ▶ 이차전지 기업 입주 허용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산단계획변경 등에 대해 '사전컨설팅+우선 심사'로 기간 단축 ③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약 0.2조원, '24~'29년, 부산 ▶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사업 면제 → '24.3월까지 관련 절차 마무리 ④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약 2.6조원, '23~'30년, 대구 군위 ▶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 예타 면제 ▶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 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약 5.6조원, '23년~'30년, 인천 옹진 ▶ 해상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향계측기 설치허가 신속 발급 지원
3 사업분쟁 조정·중재	⇒ 조정위원회 본격 가동(9월~)으로 발주처(官)·사업자(民)간 갈등·분쟁 조정·중재 *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에 34건 조정 접수, (1차) 15건 (2차) 19건 조정 추진 ①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약 1.3조원, '16~'26년, 경기 고양 ▶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협의 지원 * 당사자간 합의시 '26년 아레나(공연장) 시설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 재개 ② 고양 관광속박시설 건설 약 1.2조원, '13~'27년, 경기 고양 ▶ 착공지원위약금 부담 완화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 ③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약 1.4조원, '20~'27년, 인천 검단 ▶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 ④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약 3.1조원, 발주처가 LH인 11개 사업 통합 ▶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협의 지원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제도 마련(23.3월) 했으나 사례 無 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약 0.1조원, '20~'25년, 경남 창원 ▶ 그린벨트 활용에 따른 복구사업 부담 경감 방안 협의 지원 ⑥ 수색 역세권 DMC 개발 약 0.1조원, '17~'27년, 서울 은평 ▶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액 산정 협의안 마련·협의 지원 ⑦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약 1.6조원, '09~'26년, 경기 김포 ▶ 방송·영상 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설립 허용 방안 협의 지원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팀장: 기재부·국토부 1차관)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
⇒ 실제 투자로 연결될 때까지 지속 점검 및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

※ 애로 유형 : ①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②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 ③ 사업분쟁 조정·중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은행간 시장 관행 및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

- 국제(글로벌) 표준에 맞춘 시장관행 개선,
안정적인 거래환경 조성,
- 국내 외국환은행의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 추진

2023-11-08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은행간 시장 관행 및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함

외환당국은 '23.10.18(수) 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고, '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24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정식시행할 계획임

금번 시행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되어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기반시설(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① 국제(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 ②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③ 외국 금융기관(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임

< 과제별 이행 계획(안) >

	과제	목표
글로벌 표준에 맞춘 외환시장 관행개선	• 국내 외환시장 「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 신설 <외시협 의결 및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23.12월
	•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물환중개사가 모니터링용 화면 개발하여 단말기에 추가>	~'24.03월
	• 對고객 당일 결제 거래의 Cut-off time 시간 확정 <외시협 의결>	~'23.11월
	• 개장시간(09-익일02시) 거래 · 결제일 통일 <외시협 논의: 00~02시 거래 당일(T) 소급 등>	~'24.06월
	• 다양한 환율정보 제공(시간대별 시점 · 평균환율) <현물환중개사가 시장정보업체(Refinitive, 인포맥스 등)와 협의진행>	~'24.03월

인 프 라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외환거래 수요 분산 안내 <외환당국 행정지도 공문발송>	~'23.12월
		•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23.12월
		• 국내 외환중개사 경유 준비(현물환 API 연결 등) <현물환중개사-RFI 체결 추진>	~'24.04월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 시장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은행 제도 개편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 절차 개정 등>	~'23.12월
		• 연장시간대(15:30~익일02시)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 허용 <외시협 안내, 국내은행-국내 외은지점 거래 준비>	은행별 준비시점부터
		• 업무대행기관 제도 도입(11.7일) 및 시행준비 <한국은행의 외전망보고서 확정 · 전산개발, 대행기관-RFI 보고준비>	~'24.0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 ·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 · 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 · 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하였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 SKT 37~99GB 구간 4종, KT 50~90GB 구간 3종, LG U+ 50~125GB 구간 4종 출시

** (청년 24종)데이터 최대 2배 / (고령층 10종)일반 대비 20% 저렴 / (온라인 23종)일반 대비 30% 저렴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됨

* 국내 출시 중저가 단말 종류 추이 : '21년 13종(국산 10종) → '22년 11종(국산 8종) → '23.上 4종(국산 2종)

이에 정부는 통신사·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
 -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
- ② **5G 요금제 개편 ('24.1Q 시행)**
 - '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 ③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4.1Q 시행)**
 -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 ④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24.1Q 시행)**
 -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
- ⑤ **시장 과점구조 개선**
 -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여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
 -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
 -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22.9월 일몰)를 상설화

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자유무역지역(FTZ) 혁신전략 포럼 개최

-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인공지능(AI) 기반 도심형자유무역지역 도입 등 정책 방향 논의

2023-11-07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자유무역지역(FTZ)*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산업·지역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향후 30년 간의 자유무역지역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함

* Free Trade Zones: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 국내에 위치하지만 자유무역지역법,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유보 혜택 부여

이번 포럼은 자유무역지역 도입 후 50여년간 성과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30년 후 자유무역지역의 밑그림이 될 '자유무역지역 제도혁신 전략'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와 산업·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공청회),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수출역량 강화 방안 및 탄소중립 관련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수출전략 특강도 함께 진행됨

공청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방식의 수출특구로의 전환을 위해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산단형·공항형·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융복합화, 자유무역지역 내 산업인프라 고도화·그린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논의됨

또한, 향후 30년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① (1단계) 디지털자유무역지역 및 융합형(산단형 +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도입
- ② (2단계) AI기반 '글로벌 도심형자유무역지역 조성 (서비스·R&D수출)'
- ③ (3단계) 100% 수출기업 전용공간인 '수출전용파크' 구현 및 미래기술 접목 단지 고도화 추진 계획 제시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2023-11-06

11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 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됨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11.6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4.6월말까지 금지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7월말 이후 주요 증시 하락률(7.31~11.3.)

- [韓KOSPI]△10.0%, [韓KODSAQ]△16.4%, [美S&P500]△5.0%, [美NASDAQ]△6.0%, [유로스톡스] △6.6%, [日니케이225]△3.7%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 대차정보 보관의무('21.4월) / 대주 상환기간 연장('21.11월) /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대주 담보비율 인하('22.7월) 등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임.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함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추진

-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됨
-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검토
-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음
-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 추진

③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11.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11-08 시행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해당 전기 분야의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임 (제33조제1항제2호)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17 시행 예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해당 기업의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

이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및 전환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시 보고 및 변경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 (제11조의8 신설)

- 창업주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하도록 함

②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요건 (제11조의9 신설)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날짜와 전환된 수량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0 신설)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사항 중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17 시행 예정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의 범위에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가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17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중의 기준과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가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전환 시 신사업 분야의 사업비중 기준 (제2조제2항 신설)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사업비중은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②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가준 등 (제8조의2 신설)

- 공동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 범위에 해당하고,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함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17 시행 예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18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의 요청서류 제출 기간을 피해자의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사기관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절차 및 방법 마련 (제3조의2 신설)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지급정지 요청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술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수사기관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②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절차 개선 (제4조제2항제1호나목 신설)

-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현재는 요청서류 제출 기간을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청서류 제출 기간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서류 제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회사의 요청서류 제출 기간도 늘려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08. ~12.18.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확대기한 연장 (안 제46조제4항제2호)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중소 70%, 중견 50%)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②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정비 (안 별표 2의4)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대상물품 3개 추가 및 품명·규격 정비
- ③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안 제50조제1항)
 -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운송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추가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mailto:기획재정부_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09. ~12.07.
-------	--------------------------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의 적용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 구체화 (안 제100조~제104조)**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필요한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 그룹 간 합병·분할되거나, 그룹이 신설될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신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결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 정책목적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 등 제외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투과기업의 요건과,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규정함

②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의 구체화 (안 제105조~제128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반영하는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손익에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금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 투과기업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순손익은 주주구성기업 등에게 배분함
- 구성기업이 최종 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가능한 회계기준과 사용 요건을 규정함

③ **조정대상조세의 계산방법 구체화 (안 제129조~제138조)**

-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범위 및 제외 항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 시 대응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구성기업 등에 배분함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을 위하여 당기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비롯한 각종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아도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를 규정함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취급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신고 후 조정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소액을 1백만 유로 미만의 감액으로 규정함

④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39조~제147조)**

-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구성기업 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방법과 차감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및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등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⑤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 (안 제148조~제162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은 해당 사업 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개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구성기업이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할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을 구체화 함
 -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지분율 50% 이상의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의 범위를 구체화 함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인 결합구조약정과 이중상장약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투과기업의 소득에 대한 최종 세부담은 주주들이 부담하게 됨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만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하여 조정하는 바, 그 감액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하는 바, 그 배당공제제도의 정의와 차감 가능한 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간주분배세액을 대상조세에 가산하고 4년 내 미분배시 다시 감액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적격분배과세제도의 정의와 간주분배세액의 구체적인 요건 및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 투자기업인 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의 경우 개별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투자구성기업의 범위 및 각 경우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전환기사업연도*에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최초적용연도에 적용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을 규정함

⑥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관련 세부사항 규정 (안 제163 ~167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납부방법,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와 할 수 있는 사유 및 통지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http://기획재정부.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3, 팩스: 044-215-807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11.09.
~12.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안번호 18606)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
국인투자기업이 수익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경우, 공정
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 (안 제16조제7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44-203-4614, 팩스: 044-203-4703\)](tel:044-203-4614)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06.
~12.1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실내표지 부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한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업무를 정비하고, 실내환경관리센터에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업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업무의 위탁 개정·신설 (안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신설, 제14조제2항 신설)**
 -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최초 지정됨('23.11.1.)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②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운영 관련 과태료 정비 (안 시행령 별표 제2호아목 신설, 제2호카목 및 타목 개정)**
 - 법 제16조(과태료) 개정('23.9.1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문의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044-201-6799, 팩스: 044-201-6802\)](tel:044-201-6799)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06.
~12.18.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스스로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측정 계획 공고, 입주예정자의 입회 신청서 제출, 시공자의 입회자 선정 및 입회자에 대한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위탁 측정 대상을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으로 인한 일부 건축자재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 규정 (안 제6조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의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규정
- ②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위탁측정대상 규정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위탁 측정 대상을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구체화
- ③ 건축자재 용어 정비 (안 제10조제2항, 별표5 제7호, 별지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제2호의7)
 - 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건축자재 용어 변경

※ 문의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044-201-6799, 팩스: 044-201-6802)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07.
~12.18.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률 인용조문 정리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② 다회용기 종류 신설 (안 제8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손가락·포크·ナイフ·빨대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포장 중 1회용 용기·포장을 대체하는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③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3조 및 제23조까지)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 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④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 (안 제48조제3항제4의5)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⑤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 8])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보고방법을 규정함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mailto:환경부_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1, 팩스: 044-201-7394)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07.
~12.18.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사용비율 표시 신청·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이 가능하도록 재활용제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생원료 정의 신설에 따른 내용 구체화 (안 제1조의2)

-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② 조문 이동 (안 제1조의3, 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 폐자원에너지의 정의를 종전 제1조의2에서 1조의3으로 이동
-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이동 정리

③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 (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6제1항)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하고자 함

④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안 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⑤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9호의3서식)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⑥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 (안 제23조의3)

-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그 외 20%로 설정 (안 별표 12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추가 (안 별지 제17호의5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이 적정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 (안 별지 제17호의6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⑦ 법률 인용조문 정리 (안 제 26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 관련 조문을 법 제9조의2로 정리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조문을 종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⑧ 재활용제품 추가 (안 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안 별표1 더목)
-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안 별표1 제4호라목)
-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안 별표1 제5호라목)
-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안 별표1 제9호나목)

⑨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규정 (안 별표2 제3호)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1, 팩스: 044-201-739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환수규정을 신설('23.9.14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환수 사유를 규정하고, 창업범위, 지역전담기관의 세부 지정절차의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및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창업 범위의 명확화 (안 제2조제1항 제4호)

- “법인인 중소기업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의 주식만 합산

② 지역창업전담기관 세부 절차 위임 규정 신설 (안 제27조제3항)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세부 지정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③ 창업기업 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청, 창업진흥원에 위임 (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운영, 창업기업 제품의 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창업진흥원에 위임

④ 환수 사유별 기준 마련 (안 제40조제1항제4호 및 별표4)

- 환수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4로 규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mailto:중소벤처기업부) (전화: 044-204-7623, 팩스: 044-204-763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2023-11-08 발의
-------	---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지우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현행법상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근거로 연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전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제1항)

정무위원회	보험계리사법안(윤주경의원 등 12인)	2023-11-09 발의
-------	-----------------------------	---------------

보험계리사 제도는 1981년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보험계리사가 배출되었는바, 이들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럼에도 유사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중인중개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관세사·세무사 등과 달리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산재됨에 따라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유사 전문가집단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또한, 퇴직연금·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특히, 2023년부터는 기존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원칙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이 본격 시행되고 지급여력제도(K-ICS)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계 및 보험계리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책임준비금의 산정 및 검증 등과 관련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유사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관세사·세무사 등의 예와 같이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보험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보험계리사 제도를 연금·공제 등 다양한 산업으로 육성할 환경을 마련하고 보험계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관련 산업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보험계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③ 보험계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안 제5조·제6조)
- ④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⑤ 보험계리사의 사무소 개설과 공정·성실의무, 회칙의 준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비밀의 엄수, 업무의 제한, 명의대여의 금지 등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⑥ 보험계리사는 보험계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등록과 자본금, 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
- ⑦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설립과 회원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 ⑧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1조)
- ⑨ 보험계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2조·제43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2023-11-10 발의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43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2023-11-09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점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시장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특정한 사업자가 우월적인 시장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업계에도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2023-11-09 발의

최근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납세신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해외직구, 우편물 및 기타 납세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출입 행위에는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에 대한 벌칙이, 이를 수단으로 하는 밀수입 등의 벌칙과 조세범처벌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처벌효과가 낮음

따라서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75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2023-11-09 발의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 · 고물가 · 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6조 제1항제2호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2023-11-09 발의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 및 제30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023-11-10 발의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87조제3항 및 제91조의19제1항)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2023-11-07 발의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관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적합 여부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운영방식은 인공지능 관련 무기체계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하여 첨단무기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 · 전문적 ·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 ·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3-11-10 발의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6인)

2023-11-06 발의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무공해자동차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는 내연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주로 운영 중으로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1회충전 주행거리 등 별도의 환경성능 기준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무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1회충전 주행거리를 잘못 측정하더라도 해당 제작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제6항 및 제48조제2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조해진의원 등 10인)

2023-11-09 발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선진국 주도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반 금융 체제 규제 강화의 압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EU 등 국제사회에서 법률로 규범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ESG 규제 압력은 한국경제에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의 ESG 경영은 중장기적인 리스크 헤지(Risk Hedge Management)이며, ESG 규제의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

국내 대기업의 경우 ESG 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는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ESG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룩하여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환경·사회·거버넌스의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기업등의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③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안 제7조)
- ④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안 제11조)
- ⑤ 환경·사회·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위원회를 두어야 함 (안 제15조)
- ⑥ 지방의 환경·사회·거버넌스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 환경·사회·거버넌스위원회를 두어야 함 (안 제20조)
- ⑦ 정부는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안 제23조)
- ⑧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24조)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안 제27조)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절차, 보조금 및 투자·융자사업 지원 등에 있어서 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등의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여야 함 (안 제28조)
-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환경·사회·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32조)
-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원사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 활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3조)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2023-11-08 발의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총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차량총당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노선 여객자동차”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역 여객자동차는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일평균 운행거리가 짧고 법령상 최대 가용한 차량이 길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때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안 제84조제2항제2호)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2023-11-09 발의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예결위	예결소위	11/15(수) 10:00	- 예산안 심사
정무위	예결소위	11/13(월) 10:00	- 예산안 심사
	예결소위	11/14(화) 10:00	-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5(수) 10:00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기재위	전체회의	11/13(월) 10: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청원소위	11/14(화) 14:00	- 청원 심사
	조세소위	11/15(수) 10:00	- 법안 심사
	경제재정소위	11/16(목) 10:00	- 법안 심사
	조세소위	11/17(금) 10:00	- 법안 심사
교육위	예결소위	11/13(월) 14: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4(화) 10: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등 상정
과방위	예결소위	11/13(월) 09: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4(화) 14: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등 상정
외통위	예결소위	11/13(월) 10:00	-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5(수) 10: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소위	11/16(목) 10:00	- 법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11/15(수) 10:00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회
행안위	법안1소위	11/14(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11/15(수) 10: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11/16(목) 10:00	- 법안 심사
문체위	예결소위	11/14(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6(목) 10:00	- 예산안 등 의결
농해수위	전체회의	11/13(월) 14:00	- 예산안 의결

산자중기위	예결소위	11/14(화) 10:00	- 예산안 심사
	예결소위	11/15(수) 10:00	-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6(목) 10: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복지위	예결소위	11/13(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14(화) 10:00	- 예산안 등 의결,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 상정
환노위	예결소위	11/14(화) 10:00	- 예산안 등 심사
국토위	예결소위	11/13(월) 10:00	- 예산안 심사(국토분야)
	예결소위	11/14(화) 10:00	- 예산안 심사(교통분야)
	전체회의	11/15(수) 14: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등 상정
예결위	예결소위	11/13(월) 10:00	- 예산안 심사
	예결소위	11/14(화) 미정	- 예산안 심사
	예결소위	11/15(수) 미정	- 예산안 심사
	예결소위	11/16(목) 미정	- 예산안 심사
특별위	인사청문회	11/13(월) 10:00	- 헌법재판소장(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11/16(목) 10:00	-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보고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3(월) 09:30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이상헌 · 김윤덕 · 전재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13(월) 10:00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3(월) 13:30	미래 DX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자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김성원 의원실, DX거버넌스협의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3(월) 15:30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공단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3(월) 18:30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4(화) 09:30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김성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4(화) 10:00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국무조정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14(화) 13:30	우리기업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위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현주소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4(화) 14:00	건축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정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4(화) 14:00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direct pay) 도입 방안 토론회	김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4(화) 14:00	전기산업법 개정(10.31)에 따른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 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	이용빈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14(화) 14:00	항공보안 현재 상황진단과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맹성규 · 김두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5(수) 09:30	2045, 광복 100주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 선진국 핵심리더 대한민국, 전략과 비전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5(수) 10:00	간병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권 보호방안 국회 토론회	우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1/15(수) 14:00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장철민 · 최인호 · 김민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15(수) 14: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김성원 ·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6(목) 07:30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전혜숙 의원실 등	본관3식당 별실
	11/16(목) 09:50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동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자료집 등	11/13(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3. 10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1/13(월)	「팩트북」 제105호(2023-5호) 발간 - 초거대 AI	국회도서관	
	11/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5호(2023-23호) 발간 -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11/15(수)	「World&Law」 제2023-21호 발간 - 의료 데이터, 활용도 하고! 보안도 지키고!		
	11/15(수)	「금주의 서평」 제653호 발간 - 도서명 : 플립 싱킹(Flip Thinking) - 저 자 : 베르톨트 건스터		
	11/17(금)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13(월)	「Futures Brief」 제23-18호 발간 -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뉴스레터(제20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6(월) 10:00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집중토론회 - 국정기조 대전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6(월) 10:00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 토론회	노웅래 · 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6(월) 10:30	장기요양시설 위탁급식 현황과 개선 방안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6(월) 11:00	사회적기업 혁신 - 민간주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선언	박정 · 이학영 ·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6(월) 14:00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추진 선포식 및 토론회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6(월) 14:00	경의중앙선 지하화 토론회	김용민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7(화) 10:00	IB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7(화) 10:00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허영 ·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7(화) 14:00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 - 일본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발전방안	이종성 ·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7(화) 14:00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공인 판로개척의 해법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11/8(수)	「금주의 서평」 제652호 발간 - 도서명 :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 저 자 : 엘라 F. 워싱턴	국회도서관	
	11/9(목)	「현안, 외국에선」 제70호(2023-20호) 발간 -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11/9(목) 10:00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0(금)	「2024년도 중·장기 재정 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10/3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2호 발간 -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06~11.1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06(월)	금융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
11/06(월)	기업지배구조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2. 주주의 표심을 잡아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표대결
11/07(화)	바이오/헬스케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11/08(수)	ESG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1/08(수)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및 시행
11/9(목)	방송통신(TMT)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11/10(금)	건설/부동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10(금)	금융	가상자산범죄에 대한 수사 확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